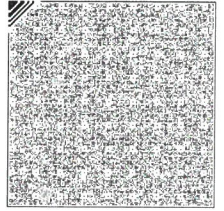




## 기획재정부



수신 에이피자산운용주식회사  
(경유)

제목 외국환업무등록 통지(에이피자산운용주식회사)

1. 에이피자산운용주식회사가 우리 부에 제출한 외국환업무 등록 신청을 검토한 결과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.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등록 후 외국환거래법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제한·정지될 수 있으며, 명칭, 본점의 소재지 또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우리 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3. 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증 발급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귀 사의 소재지 관할 구청에 면허세를 납부한 후 납세필증 사본 1부를 1주일 이내에 우리 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별첨: 외국환업무 등록증 1부. 끝.

기획재정부장관



행정주사보

이승준

외환제도과장

전결 2022. 5. 12.

심현우

협조자

시행 외환제도과-448

(2022. 5. 12.)

접수

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, 기획재정부 (어진동)

/ <http://www.moef.go.kr>

전화번호 044-215-4758

팩스번호 044-215-4819

/ [mnmnkk@korea.kr](mailto:mnmnkk@korea.kr)

/ 비공개(7)

제 2022-11호

## 외국환업무 등록증

회사명 에이피자산운용주식회사

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 
16층(우편번호: 07326)

위 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
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(외국환거래규정  
제2-14조의 해당업무)의 취급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 
확인함.

2022년 5월 11일

기획재정부 장관

